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가합59409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20523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가합594098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5. 5. 8.(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2015. 7. 10.(피고 4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5. 8. 1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46,069원 및 그 중 915,643,519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3. 12. 2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 2013. 6. 28.까지(이후 2015. 6. 26.까지로 변경), 신용보증원금 9억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6. 28.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0. 14.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9.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923,400,49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12. 19. 피고 회사로부터 7,756,973원을 회수하여 2014. 12. 19. 기준 잔존 대위변제금은 915,643,519원(= 923,400,492원 - 7,756,973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확정지연손해금 2,550원(= 7,756,973원 × 연 12% × 1/365)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0. 12. E, F에게 부인인 피고 D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3동 207호를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2013. 12. 23. 피고 D에게 위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위 1억 원을 피고 B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308동 1103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 B,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46,069원(= 잔존 대위변제금 915,643,519원 + 확정지연손해금 2,550원) 및 그 중 915,643,519원에 대하여 위 2014.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1) 피고 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래채권의 경우에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D에게 1억 원을 지급한 2013. 12. 23. 이후인 2014. 12. 29. 원고가 피고 I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2. 6. 28.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② 피고 회사가 2012년 197,297,181원, 2013년 560,378,98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3. 8. 2.경 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피고 회사가 2014. 10. 14.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실제로 원고가 2014. 12. 19.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 가) 위 인정사실과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3. 12. 23. 피고 D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G아파트 매각대금 9억 7,000만 원과 11,326,933원의 금융자산이 있었고, 그 밖에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위 인정사실과 갑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①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개연성이 현실화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을 고려함에 있어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915,646,069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② 우리은행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 ③ 기업은행에 대한 약 94,667,000원의 보증채무, 농협은행에 대한 약 1억 원의 보증채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약 66,216,000원의 보증채무, 메리츠증권에 대한 약 30,084,000원의 보증채무가 있었다.

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피고 D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증여계약의 존부 피고 B이 2013. 12. 23. 피고 D에게 지급한 1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D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는 위 1억 원을 피고 D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의 존재가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로 소유하며 거주하던 G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처인 피고 D에게 지급하여 피고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1억 원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피고 B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이 감소하였고, 피고 D는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

② 위 1억 원이 지급된 2013. 12. 23. 당시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반면, 피고 D는 합계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피고들은 피고 D 명의로 H아파트를 임차한 이후에도 공동으로 거주하였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고 B이 피고 D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 B은 G아파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피고 D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케 하여 이를 피고 D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 D는 2014. 1. 15.부터 2014. 9. 5.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01,143,000원을 지급하여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위 기간 피고 D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거래내역은 피고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부터 계속되었으므로, 위 101,143,000원의 지급을 차용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B이 피고 D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 B의 재산 상황과 1억 원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D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는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와 공동생활을 해온 점,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B은 피고 D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 D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3. 12. 23.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강열

판사서경민

판사이보경